

업무지침

2025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2025. 3.



보건복지부

목 차

※ 주요 개정사항	1
I. 자격신고	2
1. 개요	4
2. 자격신고	6
3.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9
4. 자격신고 업무 관련 행정사항	10
II. 보수교육	12
1. 개요	14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17
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31
4.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32
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33
III. 참고서식	38

'25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자격신고-4. 자격신고 업무 관련 행정사항】		
10p (신설)		다. 자격신고 등 안내 ○ 협회는 필요시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를 위한 신규 자격발급자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음 * 안내에 필요한 최소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함
【보수교육-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20p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 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신설)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연도 출산자는 해당 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미취업 출산자 면제는 2025년부터 적용

제 I 부

자 격 신 고



· I 자격신고

1 개 요

가. 추진 배경

-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법」 개정('15.12.29. 공포, '17.1.1. 시행) 및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시행('17.1월~)

다. 법적 근거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이하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라. 자격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1) (자격신고)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9항에 따라 업무위탁

- 자격신고 접수 업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한간호조무사 협회에 위탁(∼'25.12.31.)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 ⑪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격신고시스템)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위탁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자격신고

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간호조무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완료 필요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1. 1.부터 '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1.1.~'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7.1.1.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6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 (예) '15년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1.1.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자격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7.1.1.~2017.12.31.	2020	2023
3B	2018.1.1.~2018.12.31.	2021	2024
3C	2019.1.1.~2019.12.31.	2022	2025
}	}	}	}
산식	X	(X+3)	(X+6)

* 자격을 '21.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4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 취소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 (예) '15.3.20.에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가 2018년 자격신고 이전에 2018.4.23.에 자격 취소되어 2023.3.20.에 재교부받았다면, 취소 기간인 2018, 2019, 2020, 2021, 2022년은 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을 해당 업무 복귀전에 신고, 면허 재교부 받은해(2023년)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2026년에 자격 신고
 - ※ 절차: 자격취소 → 자격재발급 → 자격신고 → 업무 복귀
- *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4)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정지처분 기간은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
 - ※ (예) '22.1월-'22.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 '23.9월-'24.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2년-'23년 보수교육 이수, '24년 보수교육 유예 판정 후 자격신고는 정상적으로 시행
 - ※ 해당년도에 자격정지처분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판정
 - ※ 절차: 자격정지처분 →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하고 자격신고 완료 후 업무 종사

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간호조무사등규칙 별지 제9호서식)

라. 신고방법 및 절차

-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 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제2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서식)

-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
-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반려’ 결정 통지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제2항)

【신고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외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해당 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함
-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

3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자격 효력정지

나.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자격 효력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자격효력 회복 절차



- ① (복지부)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 협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회복 통보
- ② (협회)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7조)

* 협회에서 민원인에게 자격 효력회복 통보

4 자격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자격신고 결과 보고

- 협회는 신고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취업상황 등 신고서(간호조무사등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내용을 자격 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나.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자격신고 수리 거부 절대 금지

- 자격신고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 신고요건(보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다. 자격신고 등 안내

- 협회는 필요시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를 위한 신규 자격발급자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음

* 안내에 필요한 최소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함

제Ⅱ부

보 수 교 육



·Ⅱ 보수교육

1 개 요

가. 추진 목적

- 보건의료인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추진 경과

- '81. 12. 31. : 의료인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82. 4. 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4. 1. 7.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의료법 개정·시행 '94.07.08)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시행 '95.10.06)
- '96. 10. 31.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50만원
- '97. 8. 4.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50만원
 - 간호조무사: 20만원

- '99. 6. 30. :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규정 폐지(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 '99. 8. 13.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 10시간 → 8시간
- '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경고
 -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 정지 7일
- 2000. 10. 2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 8시간
- 2011. 04. 28. :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12.4.29.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2011. 11. 22.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14.11.23.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2016. 5. 29.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6.11.30. 시행)
- 2017. 1. 1. :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17.1.1. 시행)

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라. 보수교육 업무 주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

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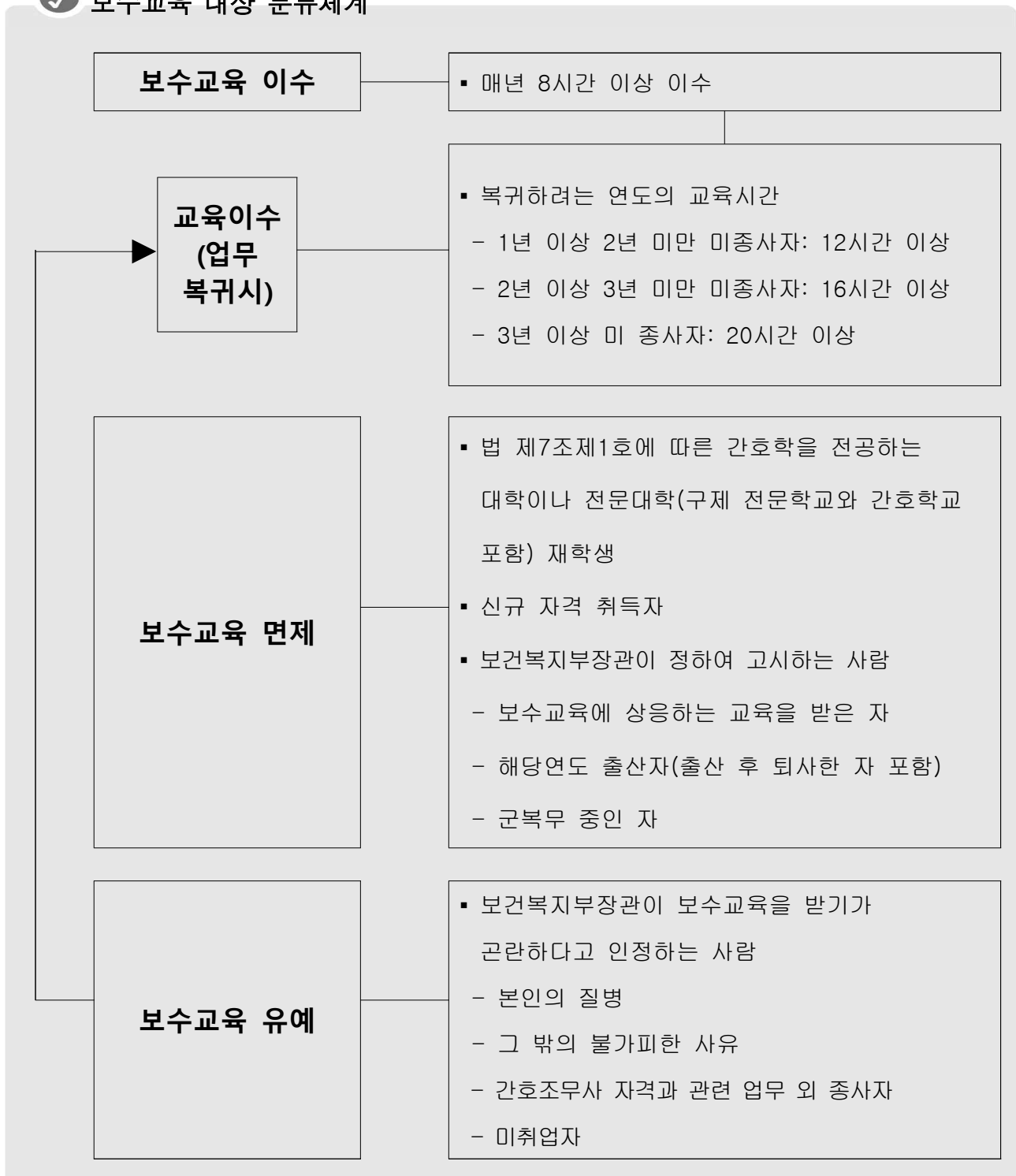
제42조(업무위탁)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 ⑪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 ‘17.1.1.시행)
 - 다만,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보수교육 비대상자 (2017-2018년에 한함)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 2016년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는 유예 대상자임
 - ※ 2017년도 하루 이상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사례1】 보건 의료기관 등에서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업의 조건일 경우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보건 의료기관 등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2016년도까지는 유예, 2017-2018년도 비대상, 2019년도부터 유예

【사례2】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 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군인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간호조무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65조제2항, 제80조의3에 따라 자격을 재발급받은 자는 자격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사례】 '15년 자격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7.1월부터 '19.5월까지 자격취소, '19.6월 자격을 재발급받았다면 업무 복귀 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19.6월 자격을 재발급받았으므로 '19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17년-'18년은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19년 자격신고를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2년에 자격신고를 해야 함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

간호조무사등규칙

제 15조(보수교육 면제·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군대에서 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간호대학(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간호대학(원)에서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간호조무사가 의과(치과, 한의과)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는 의료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자격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예) ① '19.2월 간호대학(원)을 졸업하고, ② '19.3월부터 의무병으로 군 복무자는 '19년에 6개월 이상 면제사유(①+②)에 해당하여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 해당연도 출산자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미취업 출산자 면제는 2025년부터 적용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보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예1) '24.5.1일 출산 후 '24.7.29일 복직한 경우는 '24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23.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23.12.21~'24.12.20), '24.12.21에 복직한 경우, '23년도 보수교육 면제, '24년도 보수교육 유예

(예3) '24.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24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24.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5.3.1~'27.2.28), '27.3.1에 복직을 한 경우, '24년 면제, '25년 유예, '26년 유예, '27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군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이수

(예)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22.11월 입대 후 '24.8월 제대한 경우, '22년 8시간 이수, '23년 면제, '24년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 (예) '24.3.17 ~ '24.9.16 : 6개월 미만

'24.2.2 ~ '24.8.2 : 6개월 이상

'24.4.2 ~ '24.10.3 : 6개월 이상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 치료 중인 자

✓ 보수교육 유예여부 유권해석례

- '16년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는 유예 대상자임
- '17.1.1.부터 '23.12.31.까지 하루라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24.1.1.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24.1.1(최초근무일)~'24.6.28(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유예대상자로 관리해야 함(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제3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면제 (제1항)	-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1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등 - 신규 면허 취득자(2호) ⇒ 자격증 사본 - 복지부 장관 인정자(3호)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2항)	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 타업종 재직자 : 타업종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제4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 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유예 인정 집행

(5) 보수교육 비대상자(2017-2018년에 한함)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4)항과 동일)

* 간호조무사 종사기관 내 타 면허(자격)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

*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비대상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비대상자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비대상 승인 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 기간) 5일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 8시간 이상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의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23년에 8시간, '24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5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2시간 이상(='24년 잔여 보수교육 4시간 + '25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시간

- 간호조무사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시간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이수시간은 상기 (2)항과 동일하게 적용)

(4)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인정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마.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20.1.1. 시행)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자격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 단, 면제, 유예, 비대상 기간 중 자격신고 시에는 예외
- 자격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 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 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협조사항】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 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교육과정 마련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 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표준교안('21.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배포) 활용하는 방안 권장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유
- *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보수교육 인정 권장
-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 국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빈틈없는 인적발굴망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교과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8.1월,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발표)
-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9.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간호조무사는 협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 (공통내용)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직업윤리 등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
 -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바. 보수교육 실시기관

(1) 보수교육평가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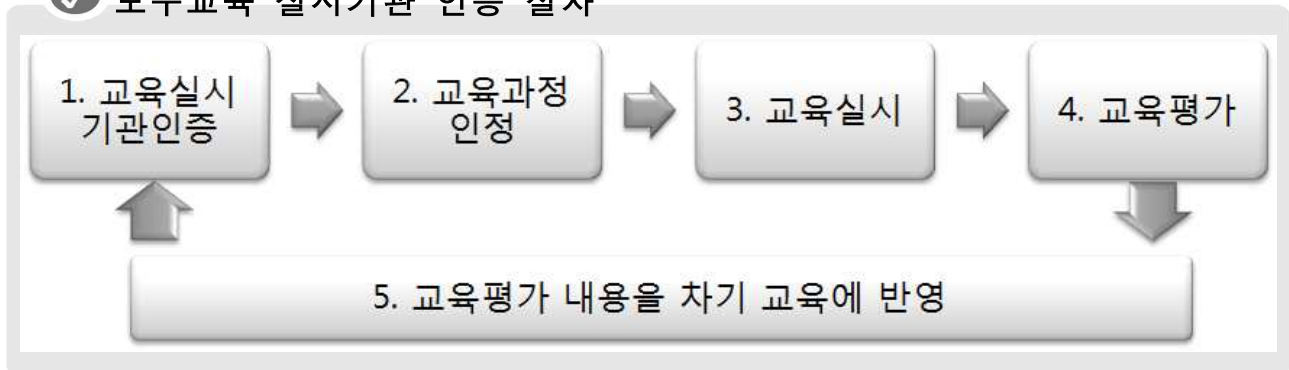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보수교육 교재관리, 강사선정, 출결관리,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평가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리강화를 위해 '보수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보수교육 실시 방법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소속 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학회 및 전문 단체, 관련 분야별 교육기관 및 보건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
- 다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 함으로써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 * 수도권은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 3회 이상, 그 외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 2회 이상 실시 요망/ 곤란한 경우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 교육시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교육과목 선택에 따라 교육시간의 총합이 8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절차 및 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 ① **(교육실시기관 인증)** 신규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적절한 인증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
- ② **(교육과정 인정)**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인정 신청을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각 직역별 보수교육으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의료기술 발달 및 환경변화에 맞춰 간호조무사의 자질향상 및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를 심사하여 판단(형식적인 내용의 교육 지양)
- ③ **(교육실시)** 각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의 출결관리 및 교육분위기 유지, 교육만족도 조사 등 현장에서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과정이 심사당시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 ④ **(교육평가)**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교육현장 감독 시 파악된 사항을 당초 교육 계획과 비교하여 교육을 평가

(4)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및 규정·지침 위반 시 제재 사항(교육기관인증취소 등)과 관련한 자체 보수교육 규정 또는 보수교육 업무지침(사무편람)을 마련할 것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인증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해 내부 심의를 통해 출결관리*,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 교육 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것

*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 출결시스템 운영 확대(단,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예외)

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보건의료인 협회 전체)

가.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 동일* 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 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8시간 ≤ 협회비)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게시사항 안내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 보수교육비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 보수교육비 환불 조건 및 기준 명시
- 연중 보수교육 계획 및 상세 일정 등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다. 기타 수수료 관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책정 및 부과 금지

4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목의 21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 자격정지 7일

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보건의료인 협회 전체)

가.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기관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매년 4월말까지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자격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나. 보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

-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확인서 등 발급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 자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신고 수리 시 협회장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최근 신고연도부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함

다.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6조)

【관계서류】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

(1) 관련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 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1.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
2.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기준·절차
 - * 실시기관 자격요건,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증 절차 등 명시
3. 보수교육 프로그램 인정 기준·절차
 - *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정 절차 등 명시
 - ** 보수교육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인정 신청 시간의 적절성, 보수교육 비용의 합리적 산출 여부는 심사항목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4.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 *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 명시
5. 보수교육비(직접비, 간접비) 산출기준

【권장 기재사항】

1. 온라인 교육 관련 사항
2.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Q&A

마.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바.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협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 이수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거나, 승인된 보수교육비 이외 임의로 추가 교육비를 징수할 수 없음
- 보수교육비용(직접비)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❶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방지, ❷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방지, ❸ 출결 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 문의 사항 안내 관련

- 소속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 자격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콜센터」(129)를 우선 안내함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제III부

참고 서식

1 주요 서식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6. 12. 30.>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인 적 사 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			E-mail
	최근 신고연도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 업 상 황	활동 여부	의료기관 근무 ([]정규, []비정규 / []전일제, []시간제) 비의료기관 근무 [] 미취업 []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조산원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한방병원 [] 한의원 [] 기타() [] 간호조무 업무 [] 간호조무 외 업무 ([] 접수·수납, [] 인증평가 지원, [] 기타) 근무 의료기관 명칭/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조무 업무 [] 노인장기요양기관 [] 보육시설 [] 산후조리원 [] 기타 () 간호조무 외 업무 [] 연구소 [] 기업체 [] (준)정부기관 [] 학교 [] 자영업 ([]노인,[]장애인,[]아동,[]여성) 사회복지시설 [] 기타()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취업	미취업 사유 [] 출산·육아 [] 이직 기간 중 일시적 휴직 [] 질병·사고 등 [] 해외체류 [] 기타 () 향후 3년 안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복귀 의사 없음 []

보 수 교 육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이수 [] 면제 [] 유예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시간 이수 의무 중 ()시간 이수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이수 [] 면제 [] 유예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시간 이수 의무 중 ()시간 이수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이수 [] 면제 [] 유예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시간 이수 의무 중 ()시간 이수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보수교육 이수증 (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해당자만 첨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매 3년마다 자격증 발급일 또는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취업상황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며, 의료기관 근무자, 비의료기관 근무자, 미취업자는 각각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보수교육은 신고시점은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 호			
간 호 조 무 사 보 수 교 육 이 수 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수교육 이수 내역		자격증 번호	제 호
귀하는 년도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보수교육 [] 면제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성명	자격증 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사 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면제사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제1항) []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합니다) 재학생 []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유예사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2항) [] 1. 본인의 질병 [] 2.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면제 [] 유예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제·유예 사유		자격증 번호	제 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